

의안처리상황표

의안번호	584
건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	김경이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2026년 3월 23일
심사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결과	2026년 4월 28일 제31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원안가결
이송연월일	2026년 4월 30일
공포년월일 및법률번호	년 월 일 조례 제 호

<요지>

생활용품·잡화 등 다양한 상업 분야에서 마약류 용어가 상품명과 마케팅 등에 남용되면서 마약류에 대한 경계심이 희석되고 특히 아동·청소년의 위험 인식이 약화되고 있음. 이에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및 정책 추진의 근거를 규정하여 건전한 소비문화를 조성하고 마약류의 위험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김경이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김경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84
----------	-----

발의연월일 : 2026년 3월 23일

발의자 : 고영욱, 김경이, 김육영, 소형준,
양순임, 이용진, 이인순, 임태근,
임현주

1. 제안이유

생활용품·잡화 등 다양한 상업 분야에서 마약류 용어가 상품명과 마케팅 등에 남용되면서 마약류에 대한 경계심이 희석되고 특히 아동·청소년의 위험 인식이 약화되고 있음. 이에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및 정책 추진의 근거를 규정하여 건전한 소비문화를 조성하고 마약류의 위험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4조)
- 다. 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5조)
- 라. 실태조사 및 사업 (안 제6조 및 7조)
- 마.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 (안 제8조 및 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사전협의 : 의약과

라. 입법예고 : 2026. 3. 27.~ 2026. 4.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건강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로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는 문화의 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상품명에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방안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개선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사업) 구청장은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상품명 사용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2.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 캠페인 및 자료의 개발·보급

3.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탁)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